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9. 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8. 14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8. 18.

다. 상정일자: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8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김춘옥】

가. 제안이유

- 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,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의무(안 제3조~제4조)
-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(안 제6조~7조)
- 예산 지원, 청렴도 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~제10조)
- 공직자 및 구민 등 포상(안 제12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3조(청렴의 의무)
- 입법예고: 2025. 7.10.~ 7.30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, 이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
① 주요 제정내용

○ 제1조(목적)

-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, 구민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.

○ 제2조(정의)

- 공직자: 마포구 소속 공무원, 공무원, 환경공무원, 청원경찰, 공단 및 출자·출연기관 임직원 포함.
- 부패행위: 「부패방지법」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행위.

○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
-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함.

○ 제4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

-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,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, 부패 또는 품위 손상 행위를 금지함.

○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
- 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가 우선 적용됨.

○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

-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·시행 의무.
- 포함사항: 청렴도 실태, 기본방향·목표, 추진과제 등.
- 주민 및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 가능.

○ 제7조(사업시행 등)

- 추진 가능한 사업: 청렴도 향상 사업, 청렴 교육 및 홍보, 평가·진단·조사·연구, 부패방지시스템 구축, 기타 필요 사업

○ 제8조(예산지원)

- 제7조 사업 수행기관·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.

○ 제9조(청렴도 조사)

- 매년 청렴도 설문조사가능.
- 공정성 확보 위해 외부기관 위탁 가능.
- 주요 조사 대상: 계약, 보조금, 인허가, 민원 등.

○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

- 관련 기관·단체와 청렴 관련 협력체계 구축 가능.

○ 제11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)

- 청렴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가능.

○ 제12조(포상 등)

- 청렴 기여 공직자·부서·주민 등에 포상금, 격려품, 표창 또는 기념품 지급 가능.

② 입법 취지의 타당성

- 청렴한 행정 실현은 공공기관 신뢰 확보의 핵심 요소로, 관련 제도 정

비는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.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등 외부 평가 대응 및 내부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 존재.

③ 조문 구성의 적정성

- 목적부터 기본계획 수립, 사업시행, 포상 등 정책 실행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무 적용 가능성이 높음.
- 설문조사 등 청렴도 진단 절차, 예산지원,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운영상의 혼란 최소화 가능.

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상위 법령 기준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·운영 중이며, 자치법적 근거 또한 충실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마포구가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, 구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구민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체계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.
-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실천이 없으면 변화도 없으므로,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본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고,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

-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.
-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,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은 교육·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3조(청렴의 의무)

-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(謝禮)·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
-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